교원인사위원회규정 3-1-4

규정번호 3-1-4
제정일자 1997.6.18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1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51조에 의거 우리대학 교원(총장은 제외한다.)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·부교수·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(개정 2015.08.24., 2017.02.27)
2.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15.08.24.)
3. 부총장(교원의 경우에 한한다)·학부장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(신설 2015.11.23.)

② 정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2.27.)

1. 연구실적
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(개정 2014.09.15)
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

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이 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)

제8조(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의결된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고 있는 회의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4> <생략>

<5>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①, 제3조①, 제5조①, 제6조①, 제8조②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6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> <생략>

<4>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②항의 “교무과장”을 각각 “교무팀장”으로 한다.

<5> - <49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2.6.4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> <생략>

<3>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②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 한다.

<4> - <13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·제3항)